노인의 가족생활 실태와 정책과제

Family Life of Older Persons and Policy Implications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 우리사회에서는 더 이상 성인자녀의 노년기 부모에 대한 동거부양이 보편적인 형태가 아니며, 부부끼리 생활하다가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서 혼자 생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점점 보편적인 형태가 되어 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의존적인 존재로서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기 보다는 상호적인 정서적인 유대를 좀 더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세대간의 관계가 바뀌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정책우선순위 설정과 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 더불어 거주형태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어 특정 가구형태에 대한 관심보다는 가구형태에 따른 생활현황과 서비스 욕구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는말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은 노인의 삶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민을 상담하는 것과 같은 정서적 지지와 청소 · 식사준비 · 세탁 등 가사노동, 수발 등과 같은 도구적 도움의 교환, 현금 및 현물을 통한 경제적 도움의 교환, 다양한 정보의 교환 등을 통하여 사회적 자원으로 작동하며 노인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구심점이 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가족을 중심으로 한 규모 및 작동 실태와 가치관을 통하여 정리해보고 그러한 결과가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가족관계 및 부양의 교환 실태

1) 가족관계별 규모

노인의 가족을 가용성(availability)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존재인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67.4%이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도구적, 정서적인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약 1/3에 달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배우자와는 달리 자녀의 경우 노인의 대부분인 99.1%가 생존자녀가 있고 이들의 평균자녀수는 3.77명이며, 95.4%는 손자녀를 두고 있고 생존손자녀수는 6.32명이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이 형제 · 자매로 82.2%의 노인

이 생존 형제 · 자매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형제 · 자매수는 3.17명이다. 가까운 친인척의 경우는 54.4%로 약 절반 정도의 노인만이 가깝게 지내는 친인척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평균 가까운 친인척수는 1.34명이다. 또한 부모의 경우는 본인 부모는 5.0%가, 배우자의 부모는 7.4%가 생존한 부모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일차적 비공식적 연계망 구성요소 중 자녀가 가장 일반적인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형제 · 자매나 친인척과 같은 수평적 친족관계보다는 자녀, 손자녀, 부모 등과 같은 수직적인 관계의 의미가 더 큰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친밀한 이차적 비공식적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한 노인이 약 1/4에 달한다는 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가족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

가족의 작동 실태를 왕래 및 연락빈도를 통하여 살펴보면, 노인의 약 1/3 정도가 비동거 자녀와 월 1회 정도의 왕래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2,3회 정도의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1회 정도의 연락(83.6%)과 월1회 정도의 왕래(80.1%)는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손자녀의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손자녀를 두고 있지만 손자녀와의 왕래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통한 간접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자녀방문 시 동행하는 형태를 갖게 된다. 그 결과 손자녀와의 왕래나 연락빈도는 자녀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와의 접촉 실태를 살펴보면 14.3%만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왕래를 하고 있는데 이는 비동거 자녀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수준이며 손자녀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년 1,2회 왕래

그림 1. 노인의 가족 및 사회관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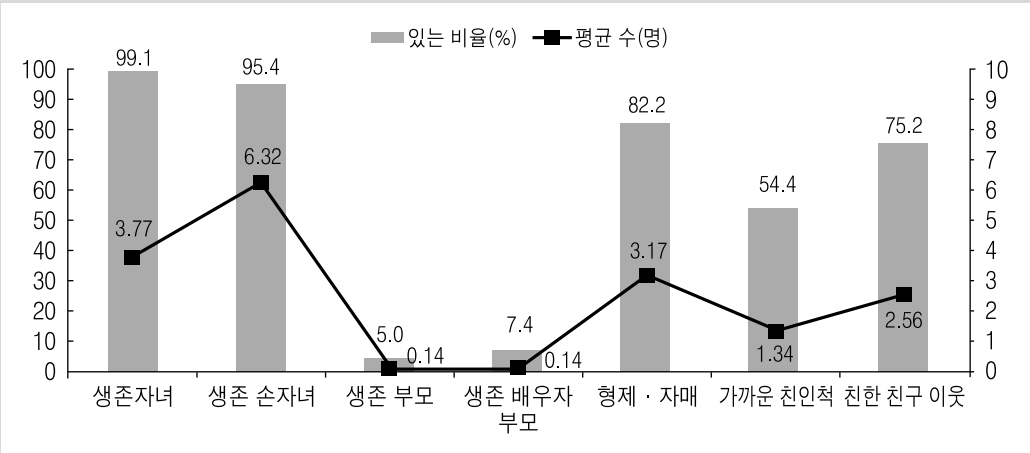

주: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분석대상으로함.

한다는 응답이 34.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빈도이다. 친인척이 없는 노인은 없지만 친하게 지내는 친인척이 있는 노인은 약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형제 · 자매를 포함하여 친인척과의 접촉 또한 직계와의 교류에 비해서는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부양의 교환

부양은 정서적 지원, 가사노동이나 수발지원과 같은 도구적 지원, 경제적 지원 등 그 내용이 다양하다. 배우자, 자녀, 부모와의 이러한 제 측면의 지원의 제공과 수혜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

그림 2. 가족과의 왕래 빈도와 접촉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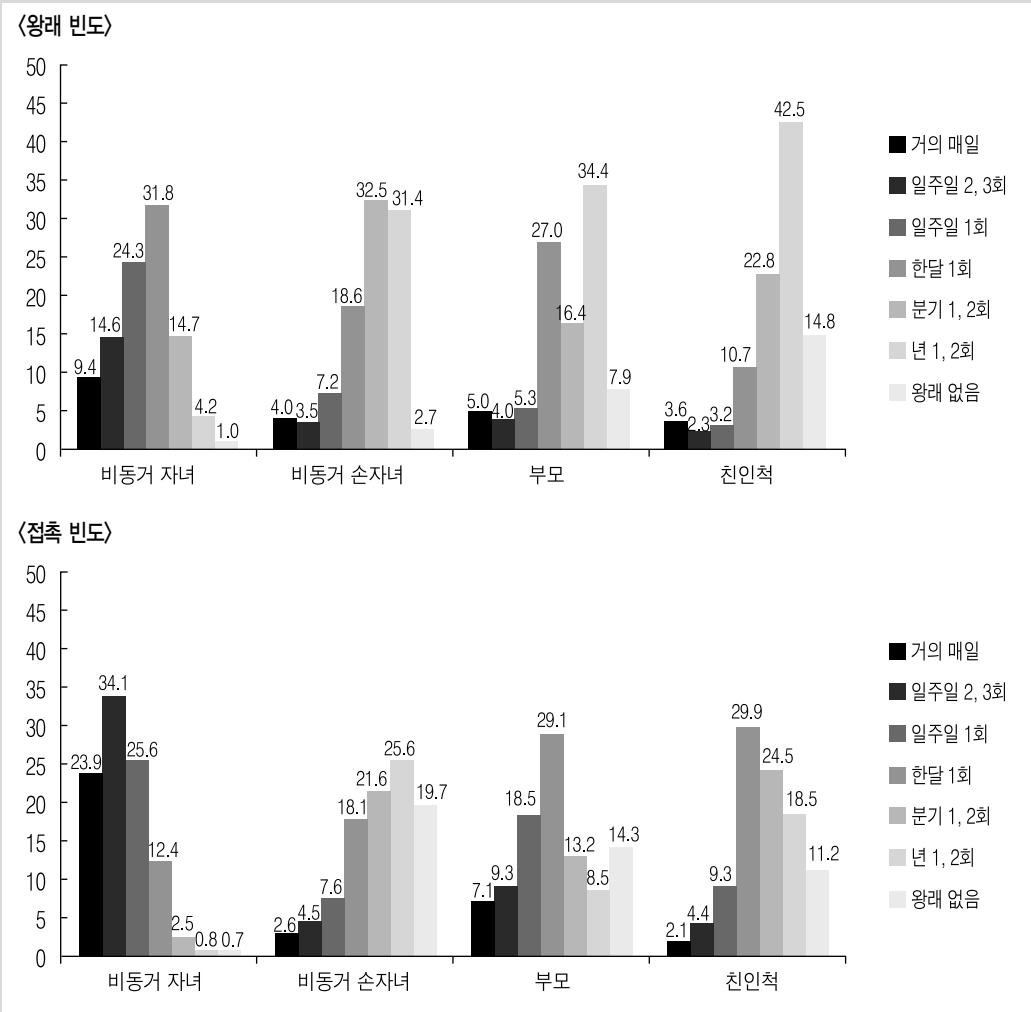

주: 본인응답자, 10, 544명을 분석대상으로함.

다. 단 배우자는 경제적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에만 초점을 두었다.

동거 및 비동거자녀, 부모, 배우자와의 각종 부양의 교환 실태를 살펴보면 동거자녀의 경우, 노인의 정서적 부양 수혜율이 64.8%이며 제공률은 59.8%이다. 정서적 도움을 주는 것보다 받은 비율이 5%포인트 높지만 대체적으로 50~60% 정도의 노인이 정서적 도움을 주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 · 식사준비 · 세탁 등의 경우도 노인의 수혜율이 59.2%이며 제공률은 61.7%이고, 간병 · 수발 · 병원 동반 등의 경우는 노인의 수혜율이 62.3%인 반면 제공률은 27.9%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노인과 자녀간의 비교적 활발한 도움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발의 경우 부모의 노화나 건강상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제공보다는 도움을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제적 부양의 경우는 정서적 도움이나 도구적 도움과는 달리 노인이 주기보다는 받는 방향의 교환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이나 현물지원이 활발하여 각각 74.6%와 76.6%의 노인이 이러한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노인이 동거자녀에게 비정기 현금지원을 한 경우는 27.0%, 현물지원을 한 경우는 45.4%이다. 또한 정기적인 현금지원의 경우 40.8%가 동거자녀로부터 지원을 받은 반면 노인의 4.6%만이 동거자녀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도 일방적으로 경제적 부양을 받기 보다는 노인도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형태가 있다는 점에서 동거실태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비동거자녀의 경우는 노인의 정서적 지원 수혜율이 70.2%이며 제공률은 61.4%로 제공률보다 수혜율이 높다. 이러한 정서적 도움의 교환은 동거자녀의 경우에 비하여 조금 높은 것으로 비동거자녀가 다수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청소 · 식사준비 · 세탁 등과 같은 가사노동의 경우는 노인의 수혜율이 46.1%이지만 제공률은 11.3%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동거자녀의 59.2%와 61.7%와 큰 차이를 보이는 현상으로, 노인에 대한 자녀로부터의 도구적 도움의 제공은 동거하는 경우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비동거 자녀도 방문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거 여부에 따른 차이는 적지만, 노인이 도구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노인이 비동거 자녀의 집을 방문하여 제공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동거 여부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수발의 경우 노인의 수혜율이 49.2%이며 제공률이 7.7%인데 이 또한 가사노동과 관련된 도움의 경우와 유사하다.

다음으로 경제적 부양의 교환실태를 살펴보면, 노인의 비동거자녀로부터의 정기적인 현금지원 수혜율이 37.0%, 비정기적인 현금지원 수혜율이 93.0%이며 현물지원도 90.6%로 매우 높다. 이는 동거자녀의 경우 동 비율이 40.8%, 74.6%, 76.6%인 것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 또한 비동거 자녀가 다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정기적인 현금지원의 경우는 동거와 비동거 자녀간의 차이가 적은 편이지만 비정기적인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은 약 20%

포인트 내외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함께 생활하지 않는 자녀의 경우 방문시 또는 명절 등에 현금 또는 현물로 선물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노인이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실태를 보면 정기 현금지원이 0.9% 비정기 현금지원 23.7%, 현물지원이 58.5%로 동거자녀의 4.6%, 27.0%, 45.4%와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즉 정기적인 현금지원은 동거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정기 현금지원은 큰 차이가 없고, 현물지원은 비동거자녀에게 조금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경제적 지원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생존해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있는 경우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지원 수혜율은 23.3%, 제공률은 37.5%로 자녀에 비하여 그 수준이 낮으며, 수혜율에 비하여 제공률이 높아 정서적 지원은 아래세대에서 윗세대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구적 부양과 경제적 부양 또한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는 소수이고 노인이 부모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경우는 정서적 지원은 80%대의, 도구적 도움은 70%대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1. 가족과의 정서적 및 도구적 부양의 교환실태

(단위: %)

특성	정서적		가사노동		수발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수혜	제공
동거 자녀	64.8	59.8	59.2	61.7	62.3	27.9
비동거 자녀	70.2	61.4	46.1	11.3	49.2	7.7
(배우자)부모	23.3	37.5	6.1	32.1	3.5	43.3
배우자	86.2	86.6	74.6	69.0	70.1	70.9

주: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하였으며 각 대상이 있는 경우만을 조사하였음.

표 2. 가족과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실태

(단위: %)

특성	수혜			제공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지원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지원
동거 자녀	40.8	74.6	76.6	4.6	27.0	45.4
비동거 자녀	37.0	93.0	90.6	0.9	23.7	58.5
(배우자)부모	0.3	4.9	6.9	10.9	65.0	74.9

주: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하였으며 각 대상이 있는 경우만을 조사하였음.

3. 노년기의 거주형태

우리사회에서는 더 이상 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양한다고 하는 전통적인 부양은 더 이상 보편적인 형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 중 노인독거는 19.6%, 노인부부 48.5%, 자녀동거 27.3%, 기타 4.6%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노인단독가구에서 생활하는 노인이 68.1%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단독가구 비율은 1994년의 40.4%, 2004년의 55.0%에서 급증한 것이다. 즉 노년기의 거주형태는 노인단독가구이며 더 이상 동거부양은 보편적 형태가 아니다.

한편 자녀와 동거하는 이유와 단독가구로 생활하는 이유가 다양화되고 있다. 단독가구 이유로는 내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개인(부부)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 등의 자발적인 이유가 39.7%이며, 자녀의 결혼, 자녀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등 상황적 요인에 의한 것이 60.3%이다. 한편,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주요 이유로는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규범적 이유가 28.4%, 자녀에게 가사지원 · 손자녀 양육 등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21.7%,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20.9%의 순이다. 즉 자녀와 동거하는가 여부보다는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거주형태를 결정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 노인의 삶의 구체적인 일상을 이해하고 정책적 대응을 모색함에 있어 더 중요할 것이다.

더불어 노인이 앞으로 선호하는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 단독가구로 생활하고 싶다는 응답이 74.2%로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자녀와 동거하겠다는 응답은 18.4%에 불과하며, 그 다음이 노인시설 입소로

그림 3. 가구형태의 변화(1994~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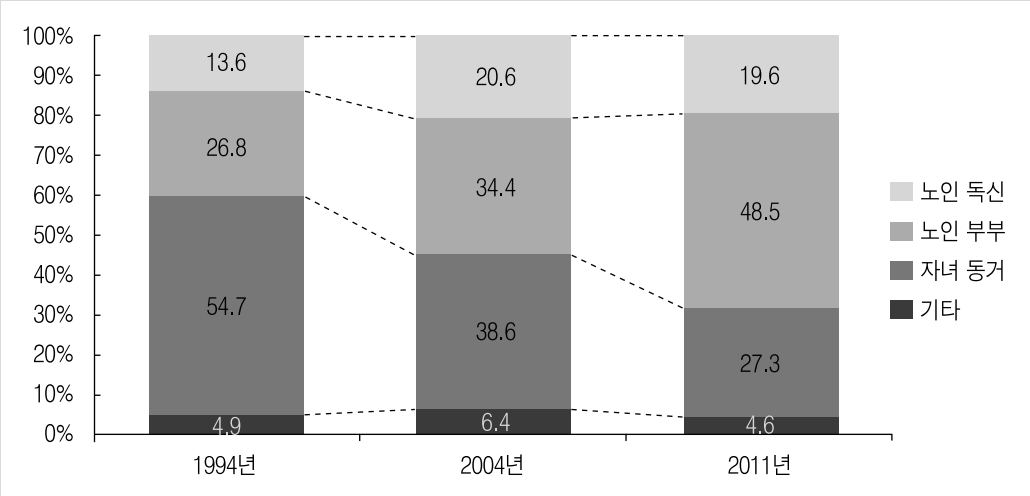

자료: 각년도 전국노인실태조사

표 3. 거주형태별 거주 거주형태 선택 이유

(단위:%, 명)

구분	단독거주 이유[1]	구분	기혼자녀와의 동거 이유[2]
경제적 능력	6.3	기혼자녀 동거가 당연하므로	28.4
건강	7.0	단독가구는 외로워서	3.9
개인(부부)생활 향유	15.0	가사노동 부담	1.8
기존 거주지 거주 희망	10.9	본인/배우자 수발 필요	7.4
자녀 가사지원 · 손자녀 양육부담	0.5	자녀에게 가사지원 · 손자녀 양육도움 제공	21.7
자녀의 결혼	31.7	장애 · 질병이 있는 자녀 보호위해	2.5
자녀의 별거 희망	7.8	경제적 능력 부족	20.9
자녀가 타지역에 있어서	14.7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	12.8
자녀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3.3	기타	0.6
자녀가 모두 딸이어서	0.6		
자녀가 없어서	1.7		
기타	0.5		
계	100.0 (7,208)	계	100.0 (1,556)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단독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만을 조사하였음.
2) 본인응답자 10,544명중 기혼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대상자만을 조사하였음.

그림 4. 향후 거주 희망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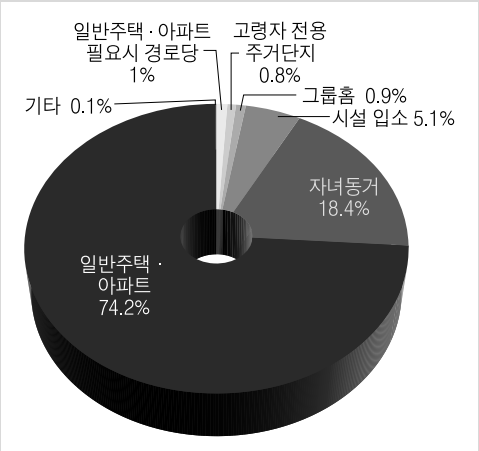

주: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5.1%, 그룹홈 생활 0.9%, 고령자 전용 주거단지가 0.8% 등이다.

4. 부모부양관련 가족의 역할에 대한 노인의 인식 및 태도

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을 살펴보면 본인 스스로가 가장 높아 55.0%이며, 국가적 차원이 30.6%, 자녀 14.2%, 기타 0.3%로 전반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높게 나타났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최근 약 20년간

자녀나 가족이 노후생활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이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즉 더 이상 노인들인 자녀의 역할이 경제적인 부양에 있다고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후의 자녀동거 부양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27.6%만이 자녀와 동거해야 한다는 생각을 표명하고 있어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노인이 약 1/4에 불과하다.

노후 자녀와 부모의 좋은 관계를 위해 중요한 것으로는 자주 연락하고 방문하는 것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45.7%에 달하고 있다. 다음은 가까이에 사는 것(15.7%), 정서적 유대관계(12.6%),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것(11.8%), 경제적 도움 주고받기(10.0%), 비슷한 가치관(2.3%), 도구적 도움 주고받기(1.8%) 등의 순이다.

재산 처리 방식에 있어서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50.8%), 장남에게 더 많이(16.0%), 경제적 사정이 나쁜 자녀에게(9.1%), 자신(배우자)를 위해(9.0%), 장남에게만(7.3%), 효도한 자녀에게(3.8%), 사회환원/가족과 사회상속 및 환원(2.6%), 딸 제외 아들에게만 골고루(1.2%)의 순으로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재산을 처리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50.8%를 차지한다.

이러한 가족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족관련 노인의 만족도일 것이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노인의 68.3%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73.5%가 만족한다고 응

그림 5.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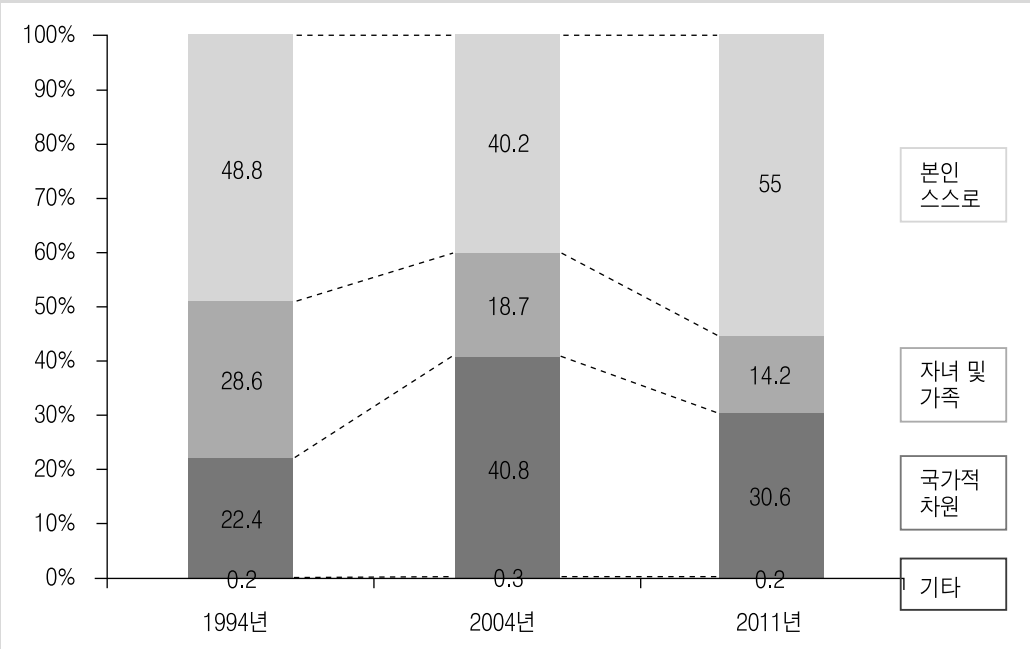

자료: 각년도 전국노인실태조사

그림 6. 노후 자녀와의 좋은 관계유지에 중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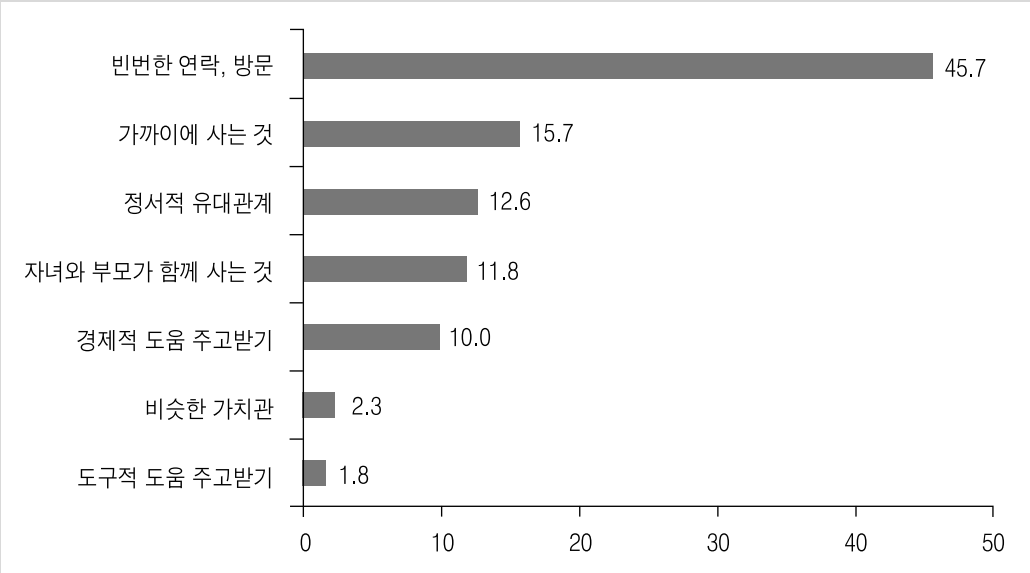

주: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답하고 있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각각 7.2%와 6.5%에 불과하다. 이러한 만족도 수준은 건강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은 34.0%, 경제상태에 대해서는 17.9%인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5. 정책적 함의

노인의 가족과 관련된 객관적인 상황과 주관적인 태도에 관한 조사결과의 특징과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우리사회에서는 더 이상 성인자녀의 노년기 부모에 대한 동거부양이 보편적인 형태가 아니다. 노인과 자녀세대의 객관적 상황과 가치관 모두에 있어 독자적인 가구형성이 보편화되고 있다. 또한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동거하면서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독자적 가구를 형성하되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면서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비상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친구 · 이웃과 같은 2차적 비공식 관계이거나 아니면 제도화된 서비스 일 것이다. 향후 노인단독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갈 것이므로 지역사회의 강화와 비상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자녀와의 관계에서 의존적인 존재로서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기 보다는 상호적인 정서적인 유대를 좀 더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세대간

그림 7. 영역별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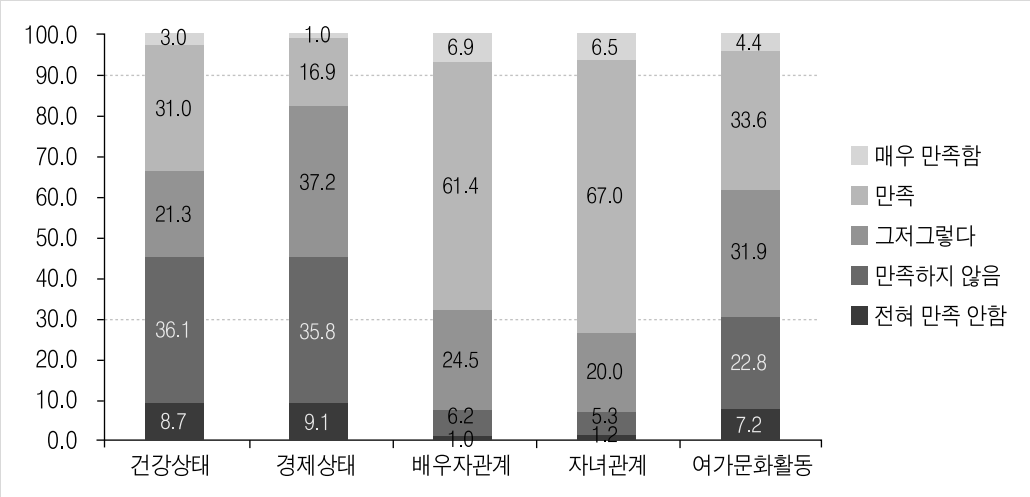

주: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각 대상이 있는 경우만을 조사하였음.

의 관계가 바뀌고 있다. 따라서 노후생활에 있어서 도구적 및 경제적인 지원은 공적인 제도를 통하여 기반을 마련하고 자녀로부터의 지원은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분담이 현실성이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서적인 측면의 유대는 가족 및 친구 · 이웃 등 비공식적인 관계를 통하여 많은 부분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성인자녀와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부모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가 약화될 가능성이 보인다. 과거 동거부양이 이루어지던 것에 비하여 자녀의 별거부양은 손자녀와 조부모가 서로 대면 접촉하고 서로를 이해하기에 한계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학령기 손자녀들의 학업부담 등을 생각해볼 때 밀접한 손자녀와의 접촉수준이 낮을 수 있고, 이는 젊은 세대가 노인세대에 대한 이해도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간의 통합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넷째, 노인의 다양한 가족상황에 대응한 사회정책의 우선순위 설정과 대응이 요구된다. 통상적으로 독거노인이 노인을 대상으로한 정책에서 우선 대상자로 설정되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한 별도의 계획과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다. 그러나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인단독가구가 보편적인 노년기의 거주형태가 되고 있어 특정 가구형태에 대한 관심보다는 가구형태에 따른 생활현황과 서비스 욕구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형식상으로는 동일한 거주형태이지만, 그러한 거주형태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다양하고 이에 따른 노인의 생활현황과 욕구는 상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주형태 자체보다는 거주형태의 결정이 자발적

인 것인지 아니면 비자발적인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즉, 자녀와 동거하는가 여부보다는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거주형태를 결정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 노인의 삶의 구체적인 일상을 이해하고 정책적 대응을 모색함에 있어 더 중요할 것이다.

자발적으로 독거를 선택한 노인들에게는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비상시에 대비한 연락체계 구축 등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자녀의 경제적 능력 미비, 정서적, 지리적 거리로 인하여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성과 자녀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연계망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자녀에게 도구적 및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함께 살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현재 노인들이 제공하고 있는 도움에 대한 가족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가치인식과 대체가능한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본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노인의 가족내 위상이 낮고 권익이 보호되지 못할 수 있음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해 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의 가구형태 변화는 부부끼리 생활하다가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서 혼자 생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점점 보편적인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부끼리 생활하다가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변화와 충격에 대하여 별다른 완화적 기제 없이 당면하게 될 노인들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배우자 사망에 대한 대응을 지원해줄 수 있는 공식 및 비공식 영역의 관심과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보건복지